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7가합106658(본소), 2017가합113335(반소) 판결
[채권양도등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01297(본소), 2022나200130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7가합10665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이석중

피고(반소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선주, 조장혁

변론 종결 2021. 11. 12.

판결 선고 2021. 11. 2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의 85.30/100 지분을,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의 6.72/100 지분을 각 양도하고,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1,544,446,789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21,672,712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한국산업은행은 966,697,508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76,126,125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8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1.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한국산업은행에게 1,544,446,789원 및 그중 306,070,4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2,513,60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4,324,80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6,136,00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5,401,968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21,672,712원 및 그중 24,112,4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56,64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611,52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66,40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725,688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1. 피고에게,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6,489,000,000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5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와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 1. 29. B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E협회의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반대채권자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

- 1) E협회는 2013. 6.경 제20차 E협의회(이하 '제20차 협의회'라 한다)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부의안건(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제2호 의안 : B에 대한 130,000,000,000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26.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하였다.
- 2) E협회는 2013. 7.경 제20차 협의회에서 피고의 참여 없이 제1호 의안 및 제2호 의안을 서면결의하고, 2013. 7. 24. 피고에게 제20차 협의회에서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3) 피고는 2013. 7. 30. 각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함을 표시하며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폐지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1)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인 원고들 및 C은행(E협의회의 구성원이었던 D은행 역시 2013. 7. 29. 반대채권자로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에게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4) 피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찬성채권자의 의결권 비율은 원고 한국산업은행 85.3/100,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6.72/100, C은행 7.98/100이고, 피고가 B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등은 신규 신용공여채권(원금 7,174,000,000원), 미지급 이자채권(115,570,192원), 발생이자채권(2013. 7. 25.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이자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출자전환 주식 2,452,800주(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이라 한다)이다.

다. 매매대금 산정협의의 결렬 등

- 1) E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F회계법인에게 피고와 D은행의 매수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를 의뢰하였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2014. 1. 24. 피고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격을 553,000,000원[=담보채권 7,294,000,000원의 청산가치 553,000,000원+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0원(무담보 채권 6,741,000,000원×회수율 0%)+보유주식에 대한 매수가액 0원]으로 통보하고, D은행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격을 16,734,000,000원[=담보채권의 청산가치 16,734,000,000원+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0원(무담보채권 26,534,000,000원×회수율

0%))으로 통보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D은행은 2014. 5. 9. 원고들 및 C은행을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들과 C은행은 연대하여 D은행에게 18,738,5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773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624호, 이하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B의 회생절차 개시 등

1) B은 2014. 6. 27.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10006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7.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0. 28. 회생계획 인가결정(강제인가)을, 2015. 10.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피고의 채무자 B에 대한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채무)는 2,400,000,000원,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무)은 원금 4,774,000,000원, 개시전이자 1,378,980,384원이다.

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담보권(금융기관대여채무)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16년)에 5%, 제3차연도(2017년)부터 제7차연도(2021년)까지 각각 10%, 제8차연도(2022년)부터 제10차연도(2024년)까지 각각 15%를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시후이자의 발생당해연도에 지급하되, 준비연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15년)에 변제한다.

나)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무)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5%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6차연도(2020년)부터 제10차연도(2024년)까지 각각 20%씩을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4) 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 B이 발행한 보통주식 227,340주는 전부 무상 소각되었고,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출자전환된 주식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23,003주이다.

마. B의 변제 등

1) B은 피고에게 위 회생계획에 따라,

가) 회생담보권의 변제로서,

(1) 2015. 12. 18. 142,816,438원(개시후이자), 2016. 12. 20. 216,000,000원(원금

120,000,000원+개시후이자 96,000,000원) 합계 358,816,438원을 지급하였고,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12. 20. 331,200,000원(원금 240,000,000원+개시후이자

91,200,000원), 2018. 12. 21. 321,600,000원(원금 240,000,000원+개시후이자

81,600,000원), 2019. 12. 20. 312,000,000원(원금 240,000,000원+개시후이자

72,000,000원), 2020. 12. 21. 302,400,000원(원금 240,000,000원+개시후이자

62,400,000원) 합계 1,267,2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나) 회생채권의 변제로서 2020. 12.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4,589,412원(원금)을

공탁하였다.

2) 위와 같이 B이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1,810,605,850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함에 따라 피고가 향후 B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아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담보권

원금 1,320,000,000원(2021년분 240,000,000원+2022년분 360,000,000원+2023년분

360,000,000원+2024년분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개시후이자(별지1 목록 '회생담보권'란 기재와 같다).

나) 회생채권

2021년분부터 2024년분까지 738,357,646원[=회생채권액 6,152,980,384원(원금

4,774,000,000원+개시전이자 1,378,980,384원)×회생채권 현금 변제율

15%×80%(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씩),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별지1 목록 '회생채권'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의 변제공탁

한편 원고들은 2017. 6.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선행소송에서 제출된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대금 849,714,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31.부터 공탁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172,643,261원 합계 1,022,357,26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 3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구 기촉법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협의회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반대채권자인 피고는 제20차 협의회회의 의결일인 2013. 7. 24.부터 7일 이내인 2013. 7. 30. 찬성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와 찬성채권자들인 원고들 및 C은행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매매계약 성립에 따른 피고의 의무

1) 채권양도 및 통지 의무 피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피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피고가 B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채권은 신규신용공여채권(원금 7,174,000,000원), 미지급 이자채권(115,570,192원), 발생이자채권(2013. 7. 25.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이자채권)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B에 대한

회생담보권(금융기관대여채무)으로 2,400,000,000원,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무)으로 원금

4,774,000,000원, 개시전이자 1,378,980,384원이 시인되어 확정된 사실, B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위 확정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 권리변경된 사실, 이후 피고는 B으로부터 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일부를 변제받고 별지1 목록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1 목록 채권은 이 사건 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형물인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85.30/100 지분을 원고 한국산업은행에게, 6.72/100 지분을 원고 수출입은행에게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를 B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B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상당액의 지급 의무 또한 피고가 B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로서 1,810,605,85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 대한 B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배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5. 12. 18.	142,816,438	121,822,421	9,597,264
②	2016. 12. 20.	216,000,000	184,248,000	14,515,200
③	2017. 12. 20.	331,200,000	282,513,600	22,256,640
④	2018. 12. 21.	321,600,000	274,324,800	21,611,520
⑤	2019. 12. 20.	312,000,000	266,136,000	20,966,400
⑥	2020. 12. 21.	486,989,412	415,401,968	32,725,688
합계	1,544,446,789	121,672,712		

따라서 피고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에게 1,544,446,789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21,672,71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B이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금원 상당액의 지급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후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권리변경된 다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어 채권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상물 급부의무와 대상물 급부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 3. 나. 2) 라)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원의 액수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들의 공탁은 변제 또는 이행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가 반소로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 청구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매매대금의 결정 가)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 원칙

(1)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채권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관한 조정이 신청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매수가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3. 7. 3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구 기촉법 제20조에서 정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대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결의에 반대한 채권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에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계속기업으로 유지·존속하기보다는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반대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역시 B에 대한 추가 신규자금공여에 반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점, 피고와 함께 E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D은행이 원고들 및 C은행을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담보자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이 산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매수가액은 매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B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B의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회수율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시점인 2013. 7. 30.을 기준으로 공동관리절차의 대상기업인 B이 파산적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채권 상호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하여 반대채권자인 피고가 위 청산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산가치의 산정

(1) 다음으로 B의 청산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2021. 11. 3.자 감정결과(감정인이 제출한 최종 감정서로서 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에 의하면, B의 2013. 7. 30. 기준 청산가치는 별지2 계산표 '청산가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65,910,408,27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감정인이 위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①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감정가액보다 높게 낙찰된 H의 사례(낙찰률 110.77%)를 비교사례로 포함하여 해남공장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였는바 1,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해남공장에 비해 감정가액이 42억 원에 불과한 H의 사례를 낙찰률 산정에 고려한 것은 부당하고, B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I회계법인이 산정한 J공장 및 K공장의 낙찰률은 43.66%이고, 선행소송의 감정인이 산정한 낙찰률은 63.42%인 사정에 비추어 J공장과 K공장에 대한 낙찰률을 63.73%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② 피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L의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조선소 낙찰률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였는바, 약 70%가 사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L의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조선소 낙찰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B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진행채권의 청산비용을 완성채권과 달리 50%로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은 해남공장, J공장 및 K공장에 관하여 감정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의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회수가능성과 관할법원의 낙찰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가중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해남공장의 낙찰률을 37.63%, J공장 및 K공장의 낙찰률을 63.75%로 각 산정하였는바, 감정인이 위와 같이 낙찰률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의 낙찰률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은 기술교육원을 해남공장(L 포함)과 일체로 보아 조선소의 낙찰률을 적용하였는데, 선행소송의 감정인 및 B에 대한 회생절차의 조사위원도 기술교육원을 해남공장과 일체로 보아

조선소의 낙찰률을 적용한 점, 기술교육원의 일부가 주거용도인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는 하나, 나머지 부분은 상업용도인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동주택과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기술교육원을 해남공장과 일체로 보아 조선소의 낙찰률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인은 B의 M에 대한 매출채권 중 선박건조가 진행 중인 매출채권의 경우 청산비용을 50%로 적용하여 청산조정 후 청산가치를 산정하였는바, 위 매출채권은 B이 M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중인 선박 및 블록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B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건조 중인 선박 및 블록의 운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매출채권에 대하여 50%의 청산비용을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의 위와 같은 청산비용 산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B에 대한 회생절차의 조사위원회도 위 매출채권의 청산비용을 50%로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결국 감정인의 청산가치 산정의 적절성을 다투는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청산가치의 배분

(1) 기초적 사실

(가) 2013. 7. 30. 기준 B의 채권자별 금융채권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국산업은행	38,300	162,116	1,236	25,762	-	147,536	374,950
D은행	10,000	32,927	341	-	-	50,715	93,983
C은행	-	12,458	122	-	-	23,725	36,305
한국수출입은행	-	1,534	26	-	-	28,634	30,194
N	-	7,174	120	-	-	24,528	31,822
M	-	50,000	85	-	-	-	50,085
○은행	-	-	-	-	1,940	-	1,940
P	437	-	191	-	-	-	628
Q	140	-	-	-	-	-	140
합계	48,877	266,209	2,121	25,762	1,940	275,138	620,047

(나) 2013. 7. 30. 기준 B의 담보제공자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남 공장	L	전남 해남군 R 토지	1	한국산업은행
위 지상 건물	2	한국산업은행		
구축물, 기계장치, 중장비	3	공동담보2) 공동담보권자 : 원고들 및 피고, D은행, C은행. 이하 같다.		
S	전남 해남군 T 토지	1	공동담보	
기술교육원	전남 해남군 V 토지 위 지상 건물	1	공동담보	
W아파트	전남 목포시 X건물 Y호	1	공동담보	
J공장	J	전남 영암군 Z 토지	1	한국산업은행
위 지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장비				
K공장	K	전남 영암군 AA 토지	1	D은행
위 지상 건물	2	D은행		
구축물, 기계장치, 중장비	33)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D은행		
	4	AB주식회사		
	5	공동담보		
전세권	서울 용산구 AC 외 3필지 AD건물 AE호 전세권	1	공동담보	
양도담보권				
해남공장, J공장, K공장의 시설물 일부	해남공장, J공장, K공장의 시설물(구축물, 기계장치, 중장비 등) 일부	-	한국산업은행 공동담보	
M에 대한 매출채권	M에 대한 매출채권	-	공동담보	

(다) E협의회는 위와 같은 각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의 분담비율을 원고 한국산업은행 60.90%,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10.10%, 피고 2.40%, D은행 16.20%, C은행 10.40%으로 약정하였다.

(라) B은 원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무렵 부담하고 있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해남공장, J공장, K공장의 일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E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신규공여받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한편,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E협의회 주채권은행의 지위에서 2011. 6.경 B, M과 사이에 B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목적으로 B의 경영관리를 M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경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경영관리계약 체결 당시 M은 B이 발행한 50,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제14조), E협의회는 위 전환사채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의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로의 전환 등 여하한 사유로 E협의회가 공동담보로서 취득하고 있는 B의 자산(해남공장 및 K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E협의회는 그 매각금액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사채원금 한도 내)을 M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6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산정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013. 7. 30. 기준 B의 청산가치 165,910,408,273원을 채권자별로 배분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분액은 별지2 계산표 '최종 배분결과표' 기재와 같이 1,042,823,634원이 된다(그 구체적 산정방법은 별지2 계산표 '나. 배분금액 산정'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무담보자산에 대한 배분방법을 아래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감정인의 2011. 11. 3.자 감정결과에 의한 계산방법과 같다).

(3) 청산가치의 배분 방식에 관한 쟁점별 판단

(가) 손익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의 주장 요지

공동관리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나 손익정산을 하도록 규정한 채권금융 조정위원회 제정의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등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의 채권액 비율이 공동관리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액 비율과 동일하도록 손익정산을 거쳐야 한다.

② 판단

E협회의 구성원간 손익정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2010. 3.경 마련한 것으로서, 해당 기준 제시 이후 새로이 공동관리절차에 착수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인바, 2009. 1. 29.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손익정산에 관한 E협회의 결의나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협회 구성원에게 손익정산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한국산업은행, D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① 피고의 주장 요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의 2009. 4. 17.자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AF 소유의 AG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공동담보관계에 있는 L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확정되었고, B은 2012. 9. 5.자로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 및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를 합병하였으므로, AH 소유이던 J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합병일 이후 발생한 B의 원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만을, AI 소유이던 K공장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B의 D은행에 대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며, 공동관리절차에서의 신규 신용공여채권은 별도의 E협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무담보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의 신규 신용공여채권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전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판단

갑 제11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7. 30. 기준으로 존속하는 B의 담보제공자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인 점,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회생절차 개시와 동일하게 보아 담보제공자산에 관한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AF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확정되는 피담보채무는 AF 소유의 AG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고, 그와 공동담보관계에 있는 L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까지 확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E협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B의 자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B이 채권자(원고들과 피고들 및 D은행, C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약정하고(제1조 제2항), B이 B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는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더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점(제10조), B은 AH과 AI을 합병함으로써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한 AH과 AI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AH이 원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AI이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이로써 B의 위 각 은행에 대한 채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하여 합병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J, 2공장의 피담보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관리절차 개시 전 B이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해남공장 및 J, 2공장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의 신규 신용공여채권도 공동관리절차 개시 전 원고 한국산업은행 및 D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원고 한국산업은행의 단독담보권 취득 여부

① 피고의 주장 요지

E협의회는 제4차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시설 등에 관하여는 공동으로 담보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의 지위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청산가치를 E협의회 구성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E협의회를 위한 공동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E협의회가 공동으로 취득한 근저당권의 경우 그 계약서에 E협의회 구성원 전부를 '채권자'로 표시한 점,

E협의회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도담보권의 경우 그 계약서에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의 지위에서 양도담보물을 이전받았음을 표시하였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도 B의 E협회 구성원 전부에 대한 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그와 달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원고 한국산업은행'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한 B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문언상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담보권자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동담보자산의 배분 기준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자산의 청산가치는 앞서본 바와 같은 E협회 구성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 한국산업은행 60.90%,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10.10%, 피고 2.40%, D은행 16.20%, C은행 10.40%의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청산가치는 E협회 구성원의 2013. 7. 30.자 기준 신규공여채권액(이 사건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B에게 신규로 제공한 대출금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각 배분하되, 2013. 7. 30.자 기준 E협회 구성원별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배분비율은 별지2 계산표 'A. 공동담보권 배분비율', 'B. 매출채권 배분비율'란 기재와 같다.

(마) M에 대한 청산가치 배분 여부

① 피고의 주장 요지

E협의회와 M 사이에 체결된 경영관리계약 제16조 제2항은 B의 부도, 회생절차, 파산절차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B의 계속기업 가능성이 상실되어 공동담보를 실행할 경우 매각금액을 M에 분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계속기업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 사건의 경우 M에 공동담보물의 청산가치를 배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판단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M이 50,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상황에 대한 담보로 E협의회가 해남공장 및 K공장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E협회에 우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협의회는 2011. 6. 1. 제15차 협의회에서 위 전환사채 상황에 대한 담보로 '향후 부도발생,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의 전환 등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B의 채권단 공동담보가 처분될 경우 인수금액 범위 내에서 처분대전의 50%를 M에게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영관리계약 및 E협회 결의의 문언상 B의 파산적 청산의 경우 E협회 공동담보의 매각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M에 우선배분하여야 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채권 매수가액은 앞서본 바와 같이 B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해남공장 및 K공장에 관하여 E협의회가 배분받을 금액의 1/2을 M에 선배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통자산(무담보자산)의 배분 기준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보제공자산을 제외한 공통자산의 청산가치 산정액은 9,679,165,429원인 사실, 위 청산가치에서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채권액인 8,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379,165,42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우선변제채권액을 넘어서 선순위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우선변제채권액을 공제한 잔여액은 E협회 구성원을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민법은 해당 담보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실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민법 제340조, 제37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413조) 있는바,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이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선변제채권액을 공제한 위 잔여액은 B의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액 중 담보제공자산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 배분비율은 별지2 계산표 'C. 무담보자산 배분비율'란 기재와 같다.

(사) 조정금액의 가산 여부

①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L/C채권 24,388,190,000원을 B으로부터 상환받고, 통화선도로 인한 위험노출 감소액 43,166,701,180원에 관하여 추가로 일반대출을 실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D은행은 R/G(선수금환급보증) 대지급금 44,769,237,200원을 B으로부터 상환받음으로써 E협의회 결의에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B의 자산가치 배분액에 원고 한국산업은행과 D은행의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따른 조정금액인 6,352,564,508원 $[(24,388,190,000\text{원}+43,166,701,180\text{원}+44,769,237,200\text{원})\times\text{피고 주장의 배분비율 약 5.7\%}]$ 을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채권 매수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판단

을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협의회는 제4차 협의회에서 '수입 L/C의 처리'에 관하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사용을 허용하기로 한다'고 결의하고, '선물환의 처리'에 관하여 'MOU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선물환 차액 미수금은 MOU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MOU체결일 이후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선물환은 2년 연장 또는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E협의회는 제12차 협의회에서 'R/G의 대지급 발생시의 처리'에 관하여 '본건 및 기존 R/G의 대지급 발생시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기로 하며 해당 선박의 재매각시 동 매각대전(한도)에서 우선상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협의회 결의에 위반하여 B로부터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L/C채권을 상환받거나, D은행이 R/G대지급금을 상환받았다는 점 및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E협의회 결의에 위반하여 통화선도로 인한 위험노출 감소액에 대한 일반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환액 또는 일반대출의무 위반액 상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E협의회 결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 이 사건 채권 매수가액 산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매매대금의 지급 의무

(1) 피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2013. 7. 30. 기준 B의 청산가치 165,910,408,273원을 채권자별로 배분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분액은 1,042,823,634원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042,823,6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피고의 주식 2,452,800주의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매수가액은 매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B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F회계법인 작성의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서)의 기재, 감정인의 2020. 6. 24.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회계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시점인 2013. 7. 30.에 근접한 2013. 7. 29. 기준 B의 자산을 349,016,000,000원, 부채를 406,28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점, 감정인은 B의 청산가치 금액이 피고의 채권가액에 미달함에 따라 지분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매수액을 0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매수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에 근접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신의칙상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 6.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022,357,261원(원금

849,714,000원+2014. 1. 31.부터 2017. 6. 20.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172,643,261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은 1,042,823,634원에 이르는바, 위 공탁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구하는바에 따라[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나(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로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966,697,508원(=1,042,823,634원×92.7%),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76,126,125원(=1,042,823,634원×7.3%)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상물 급부의무와 대상물 급부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상물 급부의무와 대상물 급부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규

판사이효신

판사김세이

별지

1)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 2) 공동담보권자 : 원고들 및 피고, D은행, C은행. 이하 같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